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광 양 시



### 광양시 낙시어선업자·선원·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낙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은 물론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하며, 낙시관련 산업 및 어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전라남도 연안 해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낙시어선의 승객” (이하 “승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영업시간 제한)

- ① 하절기(4월 1일 ~ 10월 31일) : 22:00 ~ 익일 02:00
- ② 동절기(11월 1일 ~ 3월 31일) : 22:00 ~ 익일 03:00
- ③ 선외기 설치 낙시어선 :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 ④ 단, 레이더, 레이더반사기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낙시어선은 ① ~ ③ 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 증서 상 항해시간을 적용한다.
- ⑤ 낙시승객의 안전상 해경, 관계 공무원 등의 철수 요구가 있을 경우 낙시어선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4조(낙시어선 영업제한구역)

- ①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 ②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호구역
- ③ 기타 전라남도 연안 시군에서 제한하는 구역(면허 및 허가된 구역 포함)
- ④ 낙시어선업자는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낙시어선업자는 위험한 갯바위·간출암 및 육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인공구조물에 하선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별로 낙시승객의 하선을 허용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제5조(안전운항 의무 등)

- ① 낙시어선업자·선원은 낙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낙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 ② 낙시어선어업자·선원은 낙시어선의 검사유효기간 지난 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낙시어선어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상태이거나 혈중 알콜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낙시어선을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낙시어선어업자·선원은 승객을 승선하여 항·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할 때는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오염방지)** 낙시어선어업자·선원·승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낙시어선의 선내에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 ③ 항구 또는 포구에 입항한 후 출입항 신고기관에 입항신고 시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④ 과다한 밀밥(일명 “떡밥”)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⑤ 낚으로 만든 봉돌 등을 사용하거나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자원의 보호)

- ① 낙시어선업자는 이용 승객으로 하여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금지 채장(채종) 이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포획될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배부 착용토록하고 선내에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해양경비안전서(122), 소방서(119)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5.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 제한사항을(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영업제한구역) 준수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5.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6.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서 낚시하는 승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 모두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입항하여야 한다.
- 7.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 8.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9.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 등)**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및 제5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광양시 고시 제2013-108호(2013.7.26.)는 폐지한다.

## 【별표】

# 낙시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 1. 게시방법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승선정원 - 흰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  
각형 형태로 제작

##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 3. 게시방법(예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제 2015 - 00호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명 (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00.00.00.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YS-S7-○○-○○○○	
어선 명세	어선번호	1234567-6462300	어선의 명칭	○ ○ 호
	총톤수	0.00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광양시 연안복합 제2014-00호
	선적항	광양시 진월면	최대승선 낙시 어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전라남도 연안해역 일원			
영업시간	어선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적용			
영업구역	전라남도 연안해역 일원(0000. 00. 00. ~ 0000. 00. 00.)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광 양 시 장

#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선원)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2. 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을 포획할 경우 즉시 현지수면에 방류하여야 합니다.
5.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낙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낙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유해 낙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6.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서 낙시하는 승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 모두 낙시어선에 승선하여 입항하여야 합니다.
7.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8.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9. 승객은 낙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